

BSC성 과 관리 위원 회

운 영 시 행 세 칙

부천도시공사 BSC성과관리위원회 운영 시행세칙

제정 2017.12.29. 세칙 제12호

개정 2020.09.18. 세칙 제59호

개정 2021.03.02. 세칙 제62호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부천도시공사가 경영목표의 달성 및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구인 BSC성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BSC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부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BSC성과관리 운영 체계 전반 자문
2. BSC성과지표(전략, CSF, KPI 등)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자문
3. BSC성과관리 추진실적(정성, 정량) 평가
4. 성과관리 분야 신경영기법 및 공사 적용에 관한 자문
5. 그 밖에 BSC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에 관한 자문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3.02.>

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공사 임원, 대학교수, 경영 컨설턴트, 공기업 관련 행정 및 경영 전문가 등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

2021.03.02.>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제7조(의결) ①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, 그 구성원의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이 세칙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 이 항에서 “출석자 등”이라 한다)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, 안건 등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0.09.18.>

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18.>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청
2.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
3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, 참고인,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요청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자문·평가

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②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자문·평가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·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·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03.02.]

제9조(위원의 해촉)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

2. 심의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는 경우

3.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사에 해를 끼친 경우

4. 공·사(公·私)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

5.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(비밀유지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직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(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)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 직원 및 공사 관계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자료의 사전수집, 회의안건의 사전검토, 별도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09.18.]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(2017.12.29. 세칙 제12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2020.09.18. 세칙 제59호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1.03.02. 세칙 제62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